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72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10. 2.
제출자 : 달성군수 

1. 제안이유

현행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」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없으며,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5. 7. 28. ~ 8. 18.)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